

# 03

## FTA EXPERTS

- ① 한국 경제 FTA 20주년, 경제 안보 시대에도 든든한 자산
- ② RCEP의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 한국 경제 FTA 20년, 경제 안보 시대에도 든든한 자산



김형주 부문장  
LG경영연구원

2004년 4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인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까지도 WTO 중심의 글로벌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며 회원국 간 특혜 무역협정인 FTA 대열 합류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한-칠레 FTA 협상 타결 이후 미국, EU, 중국 등 59개국이 참여하는 21개 FTA를 발효시킬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전체 교역액은 2004년 4,783억 달러에서 2023년 1조 2,748억 달러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FTA 파트너 59개국과의 2023년 교역액은 9,059억 달러로 20년간 3.2배나 늘었다. 칠레 역시 FTA 발효 첫해부터 높은 교역 증가율을 기록해 3년 차인 2006년에 2004년 대비 204%로 급증했고, 2007년에도 276%으로 3배 가까이까지 늘어났다. 그 후에도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칠레 교역 규모는 2004년 대비 334%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공정 경쟁을 외치며 시장 개방을 향해 앞다퉈 달려가던 시대는 어느덧 막을 내리고, 경제 안보와 안정적 공급망 확충을 앞세워 각종 진입 장벽을 높이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탈탄소 전환 등 미래 인류의 명운과 각국의 경쟁력을 결정할 주요 기술 및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최종재는 물론이고 핵심 원자재와 장비, 기술, 인력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점점 더 촘촘하고 광범위한 규제책들을 도입 중이다. 역설적이게도 1990년대 이후 시장 개방과 글로벌 생산 분업을 주도했던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이번에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 FTA 20년의 성과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한국이 추진해 온 FTA 정책은 성과 없는 헛수고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 어떤 정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를 측정할 ‘기준 변수’가 필요하다.

FTA 성과 ‘기준’은 대체로 명확한 편이다. FTA를 비롯해, 거의 모든 경제 정책의 목표는 자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산업·통상 정책들은 교역 확대, 투자 촉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한다. 따라서 FTA가 교역, 투자, 생산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면 이를 통해 FTA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는지, 손실을 초래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한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가 워낙 다양한 만큼, 이 지표들 역시 다른 설명 변수들과의 인과 관계가 복잡해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기준 값을 설명할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제약은 관측치 부족이었다. 그 당시 한국이 체결한 FTA는 12개였지만 그중 5년 이상 관측치가 쌓인 FTA는 교역 규모가 작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등 3개에 불과했다. EU(2011년 잠정 발효)나 미국(2012년 발효)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겨우 2~3년간의 데이터가 쌓였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석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았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다르다. 참여 중인 FTA 수가 크게 늘어났고, 발효 기간도 짧지 않은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할 만큼의 데이터가 쌓였다. 정부가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별 FTA 발효 이후 5년, 10년마다 연구 용역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하는 이행 상황 평가 보고서들을 보면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FTA가 공통적으로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한-미 FTA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고부가 가치 분야의 교역과 투자가 심화·발전하면서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고기술 품목 중간재 교역은 양방향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미국의 사업 서비스 수출과 한국의 프리미엄 내구 소비재 수출이 두드러지면서 관련 분야의 상호 투자도 증가하였다. 또한 개방 수준이 가장 높아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지만, 다행히 국내 산업 피해 우려 분야의 보완 대책 수립, 해당 분야 경제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 등이 결실을 맺으며 당초 예상되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 세계 경제 질서와 무역· 통상 환경의 변화

아이러니한 점은 ‘시장 개방’을 강조하며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해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에 도움을 줬던 미국이 이제는 가격이나 효율성보다 ‘경제 안보’와 ‘가치 동맹’을 더 중시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 배경에는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성이 갖는 경제 안보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까지도 미국은 주로 ‘일자리’와 ‘경기 완충’ 관점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중 견제와 미국 제조업체들의 리쇼어링을 부추겼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해 주요 전략 산업<sup>2)</sup> 분야의 공급망 주도권을 잃으면 국가 안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또한 FTA 협정을 통해 체결한 국가 간 약속들도 ‘안보’를 위해서라면 손쉽게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국가 간 경제 협력이나 무역협정의 목표도 확연히 달라졌다. 시장 개방 범위와 조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입법 기관 승인 등을 통해 국내법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던 전통적인 FTA 협정은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반면 무역/투자/기술/공급망 등의 합의 사항을 행정 부처 간 협약으로 비교적 느슨하게 조율하는 TA(무역협정, Trade Agreement)나 TIPF(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입법부 승인이 불필요한 만큼, 의사 결정이 빠르고 유연해 통상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협정들의 목표 역시 관세 양허 등을

1)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구경현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3월

2) 의료 및 백신, 반도체, AI, 전기차 및 EV배터리 등



통한 시장 접근 개선보다 글로벌 생산 분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특정 위협 제거를 위해 제도나 규범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 FTA는 여전히 유용한 대안

세계 경제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로 FTA에 대한 신뢰나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FTA 무용론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 안보 관련 이해가 엇갈리고 관심이 집중된 일부 전략 산업을 제외하면, 상당수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여전히 FTA 체계 내에서 상당한 보호를 받고 활용 시 관세/비관세 특혜도 누릴 수 있다. 경제 안보 중시와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로 효율성 경쟁이 힘들어진 만큼 FTA 특혜 관세율을 통해 확보한 가격 경쟁력 차이가 더 값지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과거처럼 FTA를 상대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창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시장 배제를 막는 방패 역할은 아직도 충분하다. 한 예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상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별할 때도 FTA 체결국 생산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특혜를 제공했다. 즉 과거처럼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택 역할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FTA 활용 과정에서 축적한 원산지 및 부가가치 관리 경험 역시 쓸모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특혜 관세율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종재 생산 업체의 국적뿐 아니라 중간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다수 부품 기업들의 국적과 부가가치 누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쌓은 역량은 미국과 EU가 경제 안보를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다수의 경제 안보 관련 조치들의 적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 경제 안보 시대 맞아해 원산지 관리 중요성 부각

전통적인 경제 안보 관련 교역 모니터링은 바세나르협약 등을 통해 지정한 전략 물자 품목의 통제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 등 특정 국가/기업 부품의 수출입을 ‘디리싱킹’이나 ‘디커플링’을 이유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 정확하고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받는 인도, 베트남 등이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을 대체할 만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우회수출하기 위한 원산지 세탁 유혹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혹은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처럼 대중 교역이 활발하고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마련이

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수출 통관 시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투명한 원산지 관리는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대중 수입은 최종 소비재, 수출은 자본재 비중이 높다. 즉 최종 소비재는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 대체가 손쉽지만, 중간재는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전후방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지 전략을 다 함께 수정해야 하는 만큼 훨씬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 자본재는 그 독점적 특성상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지를 다른 나라로 이동하더라도 자본재 수입선을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부가가치가 적고 거래빈도가 잦은 중간재는 물류비 등의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공급선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럴 때 해당 기업들은 자사가 통관 시 제출했던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들의<sup>3)</sup> 원산지 및 부가가치 정보를 잘 분석해 공급선 변경을 위한 효과적인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

## 경제 안보 시대로의 전환, 늦지 않게 대비 해야

자유 무역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기만 하면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던 시대도 함께 막을 내리고 있다. 이제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만큼 교역 파트너 선정 시 상대국의 비가격 요인들과 더불어 생산 역량의 보완성과 수용성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력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생산 모델, 즉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에 ‘단일 공장’을 세워 전 세계로 공급하던 사업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진 만큼 ‘중국의 빈자리(post-China)’를 나눠 받기 원하는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과 다층적 생산 협력을 전제로 한 수출 시장 확대와 생산지 투자도 검토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 발효는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보다 10년이나 늦게 이뤄졌다. WTO 중심의 글로벌 무역 자유화라는 원칙을 강조하다가 때를 놓친 감이 없지 않다. 이제 또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조금씩 나타나던 낯선 조짐들이 이제는 새로운 노멀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올 11월 미국 대선이 보편적 관세 도입 논의 등 또 다른 통상 질서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디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 기업과 정부 모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3)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에 대한 상세 내역



## RCEP의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김민재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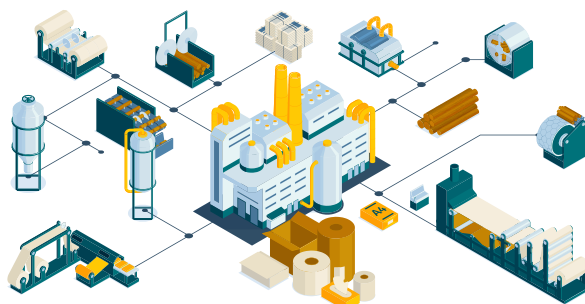


## 1. 서언

과거 가치사슬(value chain)의 국제화는 FTA 체결, EU, ASEAN 등의 지역 경제 통합, 중국의 WTO 가입, 저렴한 노동력 확보,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같은 요인을 배경으로 21세기에 들어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화된 공급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이라는 개념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GVC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 전방 산업(upstream)으로부터 후방 산업(downstream)으로 흘러가는 공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added value)의 국제적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GVC에는 설계, R&D, 원재료 조달, 생산, 운송, 소비 등 복수의 공정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된다. 국제 분업을 진전시킴으로써 경제 통합을 심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데,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GVC에 역풍이 불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및 기술 패권으로의 확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 신흥국 경제 성장, 전쟁 등이 GVC의 재편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반도체 핵심 3소재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대란, 우방국들을 포함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등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및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월 발효되었으며 전 세계 GDP, 교역량, 인구 비중의 약 30%를 점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포함된 원산지 결정 기준(Rules of Origin)의 단일화·완화, 원산지 누적 조항과 같은 요인들은 우리나라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팬데믹과 같은 환경 변화 이후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둔 효율성 중심의 린 경영(lean management)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안전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공급망 위기 시대에 회복성과 탄력성 중심의 공급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궤를 함께한다.





## 2.

### RCEP의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 가.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

ASEAN의 상품무역협정인 ATIGA(ASEAN Treaty In Goods Agreement)와 네 개의 ASEAN+1 FTA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상세한 예외 및 보조 규정 등은 배제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기준을 분류하였다. 완전 생산 기준(WO), 세번 변경 기준(CC·CTH·CTSH), 부가가치 기준(VA), 가공 공정 기준(PO)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VA의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역치를 숫자로 표기하였다. 나아가 복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병용 기준일 경우 '&', 선택 기준일 경우 '/'로 구분하였다.

【표 1】 RCEP와 기타 FTA의 각 원산지 결정 기준별 품목 수 비교

| 구분                   | ATIGA | AANZ  | AC  | AJ    | AK    | RCEP       |
|----------------------|-------|-------|-----|-------|-------|------------|
| CC                   |       | 297   | 1   | 1,479 | 5     | 1,100      |
| CC&VA40              |       |       |     |       |       |            |
| CC/VA40              | 511   | 841   |     | 122   | 524   | 288        |
| CTH                  |       | 203   |     | 416   | 11    | 475        |
| CTH&VA40             |       |       |     |       | 1     |            |
| CTH&VA55             |       |       |     |       | 3     |            |
| CTH&VA60             |       |       |     |       | 1     |            |
| CTH/(CTSH&VA35)/VA40 |       | 197   |     |       |       |            |
| CTH/VA40             | 4,559 | 2,180 | 113 | 2,921 | 3,900 | 2,410      |
| CTH/VA40/PO          |       |       |     |       |       | 78         |
| CTH/VA50             |       |       |     |       | 1     |            |
| CTSH                 |       |       |     | 7     |       | 16         |
| CTSH&VA35            |       |       |     |       |       |            |
| CTSH&VA40            |       | 3     |     |       |       |            |
| CTSH/VA40            | 129   | 1,037 |     | 34    | 73    | <b>634</b> |
| CTSH/VA45            |       |       |     |       | 1     |            |

| 구분   | ATIGA | AANZ | AC    | AJ  | AK   | RCEP |
|------|-------|------|-------|-----|------|------|
| PO   |       | 70   |       |     |      |      |
| VA35 |       |      |       |     | 3    |      |
| VA40 | 1     | 68   | 5,074 | 222 | 26   | 39   |
| VA45 |       |      |       |     | 40   |      |
| VA60 |       |      |       |     | 5    |      |
| VA70 |       |      |       |     | 1    |      |
| WO   | 4     | 308  | 8     | 3   | 6074 | 164  |

자료: 早川和伸, 「RCEP の貿易創出効果——原産地規則の観点から」, アジ研ポリシー・ブリーフ, JETRO No.141, 2021.



[표 1]에 따르면 FTA에서 가장 전형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인 CTH/VA40에 해당되는 품목 수가 모든 FTA에 있어 독보적으로 많으며, RCEP의 경우 AANZ 수준은 아니지만 CTH/VA40보다 완화된 기준인 CTSH/VA40에 해당되는 품목 수가 634개로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2〉 RCEP 및 ATIG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비교

| RCEP        | ATIGA   |            |           |      |    |
|-------------|---------|------------|-----------|------|----|
|             | CC/VA40 | CTH/VA40   | CTSH/VA40 | VA40 | WO |
| CC          | 492     | 605        |           |      | 3  |
| CC/VA49     | 8       | 280        |           |      |    |
| CTH         | 4       | 453        | 16        | 1    | 1  |
| CTH/VA40    | 7       | 2,299      | 104       |      |    |
| CTH/VA40/PO |         | 78         |           |      |    |
| CTSH        |         | 16         |           |      |    |
| CTSH/VA40   |         | <b>625</b> |           |      |    |
| VA/40       |         | 39         |           |      |    |
| WO          |         | 164        |           |      |    |

자료: 早川和伸, 「RCEP の貿易創出効果——原産地規則の観点から」, アジ研ポリシー・ブリーフ, JETRO No.141, 2021.



【표 3】 RCEP 및 AANZ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비교

| RCEP        | AANZ |             |     |                          |              |     |
|-------------|------|-------------|-----|--------------------------|--------------|-----|
|             | CC   | CC/<br>VA40 | CTH | CTH/VA40/<br>(CTSH&VA35) | CTH/<br>VA40 | 기타  |
| CC          | 294  | 493         | 6   |                          | 92           | 215 |
| CC/VA40     | 3    | 140         |     |                          | 103          | 42  |
| CTH         |      | 4           | 194 |                          | 244          | 33  |
| CTH/VA40    |      | <b>175</b>  | 3   | 48                       | 1,718        | 466 |
| CTH/VA40/PO |      |             |     |                          | 5            | 73  |
| CTSH        |      |             |     |                          |              | 16  |
| CTSH/VA40   |      | <b>8</b>    |     | <b>149</b>               | <b>8</b>     | 469 |
| VA40        |      | 1           |     |                          | 6            | 32  |
| WO          |      | 20          |     |                          | 4            | 140 |

자료: 早川和伸, 「RCEP の貿易創出効果——原産地規則の観点から」, アジ研ポリシー・ブリーフ, JETRO No.141, 2021.

RCEP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른 FTA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표 2]의 ATIGA에서 CTH/VA40, RCEP에서 CTSH/VA40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수가 625개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AANZ와 비교하여도 RCEP에서 CTSH/VA40이 적용된 품목 중 AANZ에서 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품목이 165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AANZ에서 CC/VA40, 그리고 RCEP에서 CTH/VA40으로 적용된 품목 수가 175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완화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RCEP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FTA 특혜를 적용하지 못했던 수출 기업, 특히 중소 수출 기업들이 이러한 완화된 기준을 충족시켜 역내 무역 창출 효과 및 수출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 나. 원산지 결정 기준 단일화

양자 FTA를 다수 체결하고 각각의 상이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용, 노동, 시간 등의 자원이 소모되는 현상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고 일컫는다. RCEP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존의 일본을 제외한 한·ASEAN,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 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었는데, 제각각 상이한 원산지 결정 기준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FTA를 포기하는 수출 기업, 특히 중소 수출 기업들이 많았다. 다양한 원·부자재를 특정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가공 및 제조하여 다른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란 기술적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쉽지 않다. RCEP은 이러한 다수 협정들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단일화함으로써 개별 FTA가 가지고 있는 원산지결정 기준의 상이함, 즉 스파게티 볼 효과를 상당히 제거해 주고 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 기업일지라도 단일화된 RCEP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부자재 및 중간재의 조달과 가공·조립 공정을 세팅해 놓으면 역내에서의 수출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RCEP 및 AANZ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비교

| 품목                         | 협정         | 국가       | 원산지결정기준                                                |
|----------------------------|------------|----------|--------------------------------------------------------|
| 완전자동 세탁기<br>(8450.11.0000) | 한·베트남 FTA  | 베트남      |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혹은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
|                            | 한·중국 FTA   | 중국       |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
|                            | 한·호주 FTA   | 호주       |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혹은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
|                            | 한·뉴질랜드 FTA | 뉴질랜드     |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혹은 직접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RCEP       | RCEP 회원국 |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혹은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hsinfosrch/openULS0205004Q.do> (검색일: 2022년 5월 31일)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일례로 [표-4]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CEP 회원국은 완전자동 세탁기 (8450.11.0000)의 수출에 있어 RCEP의 15개 회원국이 모두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원·부자재의 수입과 완성재 수출의 원활화, 공급망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다. 원산지 누적 조항의 활용

RCEP에서 규정된 원산지 누적 조항(cumulation)이란 다른 RCEP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부자재를 수출국의 원산지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대폭 증대시킨다. 물론 현재까지도 ASEAN 역내에서의 국제 분업의 경우 ATIGA를 통해 누적 조항을 적용하였으며 ASEAN+1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적 조항이 적용되어 왔으나, RCEP의 누적 조항을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ASEAN+2-5개국 내 거대 공급망에서의 누적 조항의 활용성과이다.

예컨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소재·부품 등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플로우(flow)에 있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시 RCEP 기준을 적용하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자재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RCEP 내 폭넓은 누적 조항을 통해 기존의 개별 FTA 네트워크에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수출 기업, 특히 원산지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 기업 등에서 효율적인 원재료 수입과 역내 수출 시장 약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 결론

다른 ASEAN+1 FTA와 비교했을 경우 RCEP는 비교적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역내에서의 교역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RCEP 역내에서의 교역 및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부가가치 및 수익성 또한 제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필수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요인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저조한 실정 이 국내 전문가 및 학계로부터 항상 지적되어 왔다. 그 원인 중 하나가 2024년 2월 기준 59개국과 21개의 FTA를 체결하고 각각의 기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인데, RCEP을 통한 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일화는 이러한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다. 우리 기업, 특히 중소 수출 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용이한 원재료 수입과 역내 수출 증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3소재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수입차질 등 공급망 대란을 경험한 후 적극적인 무역 다변화에 임하고 있다. 15개국이 참여한 RCEP이라는 거대 경제권 내에서 폭넓은 누적 조항을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저렴한 원·부자재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가공 및 조립하여 생산성 높은 완제품을 양허 품목으로서 역내에 수출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입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상기 합의는 궁극적으로 역내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을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역외로는 배타성을 가질 수 있으나 RCEP의 경우 전 세계 대비 약 30%의 교역량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49% 상당을 포괄하는 시장이기 에 해당 지역에서의 RVC 강화는 큰 의의를 갖는다. 이는 모두 역내에서의 효율적·안정적인 수출입에 수렴하며, 무역 자유화 및 시장 개방을 통해 무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에 기초한다.

